

회사분할과 기업구조조정

1999. 3.

수석연구원 정 윤 모

한국증권연구원

— <著者 註> —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및 외국의 회사분할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회사분할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분할제도가 원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본연구원에서 이미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그에 미루고자 합니다. 경제계의 요구사항이었던 회사분할제도가 우리 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입단계에서는 물론 그 이후의 시행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주로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초기에 예상해 볼 수 있는 활용방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개선과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수신인 : 정윤모

E-mail : cym@ksri.org

Tel : 3771-0622/3

Fax : 3771-0630

목 차

I. 회사분할의 의의	1
II. 회사분할의 유형	3
1. 완전분할 · 불완전분할	3
2. 단순분할 · 분할합병	3
3. 인적분할 · 물적분할	4
III. 외국의 회사분할제도 개관	6
1. 미국	6
2. 독일	11
3. 프랑스	18
4. EU	22
IV. 우리나라의 회사분할제도	28
1.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28
2. 상법상의 회사분할 형태	29
3. 분할절차	30
4. 회사분할의 효과	35

V. 회사분할과 구조조정	38
1. 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38
2. 회사분할을 이용한 구조조정방법	39
참고문헌	54

그 립 목 차

<그림 V-1>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40
<그림 V-2> 부진사업의 정리	42
<그림 V-3> 지주회사로의 전환	43
<그림 V-4> 주주간의 내분해소	44
<그림 V-5>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46
<그림 V-6> 위험부담의 제한	47
<그림 V-7> 노무관리의 차별화	48
<그림 V-8> 자금조달의 용이	49
<그림 V-9>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의 분리	50
<그림 V-10> 공정거래법 적용의 배제	51
<그림 V-11> 추가상승 도모	52
<그림 V-12> 절세효과	53

< 要 約 >

급변하는 기업환경하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 조직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조조정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기업조직의 확대를 위한 제도는 비교적 정비되어 있었지만, 기업의 축소조정을 위한 제도는 미비되어 있었다. 그 결과, 기업의 축소조정을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가 어려웠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독일·프랑스·EU 등 주요국과 지난 연말 도입된 우리 나라의 회사분할제도를 살펴보고, 이 제도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현 단계에서는 특정사업의 전문화, 부진사업의 정리, 지주회사의 형성, 주주간의 내분해소, 위험부담의 제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의 강화, 노무관리의 차별화 등을 위하여 회사분할제도가 활용되리라 예상된다.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여부는 당해 기업이 처한 상황과 경영전략에 따라 상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 기업들이 회사분할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회사분할제도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 회사분할의 의의

- 「회사분할」(scission, division)이란 ?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회사분할에 의해, 물적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짐.
 -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사실상의 회사분할」(광의의 회사분할)
 - 회사분할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때에는, 회사분할이라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분할의 효과가 있는 기존의 유사제도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였는데, 이를 광의의 회사분할이라고 함.
 - 이에는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이 있음.
 - 광의의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못함.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수단

- 일반적으로 회사분할은 회사합병의 반대현상으로 이해되지만, 기업 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됨.

○ 입법례

— 프랑스

- 1966년 상사회사법(371조 이하) : 회사분할에 관한 최초의 입법
- EU 제6지침을 국내법화하기 위하여 1988년에 상사회사법 개정

— 독일

- 1994년 사업재편법(UmwG., 1995년 시행) (123조 내지 173조)

— EU

- 1982년 제6지침(The Sixth Directive)
- EU 가맹국들에게 동 지침에 따라 회사분할제도를 입법화하도록 권장

— 영국

- 1987년 개정회사법 (Companies (Mergers and Divisions) Regulations 1987)

II. 회사분할의 유형

○ 회사분할의 유형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1. 완전분할 · 불완전분할

○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완전분할」(소멸분할)

- 완전분할이라 함은 분할 후에 피분할회사가 소멸하는 회사분할
 - 분할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 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전 회사는 청산절차없이 소멸됨.

○ 「불완전분할」(존속분할)

- 불완전분할이란 분할 후에도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회사분할
 - 분할전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분할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전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속함.

2. 단순분할 · 분할합병

○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단순분할」

- 분할전 회사가 단독으로 분할하여 합병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분할
 - 피분할회사가 분할하여 독자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분할부분이 단독으로 회사로 됨.

○ 「분할합병」

-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로서, 분할전 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기존회사의 일부와 합쳐져 하나의 회사로 되는 회사분할
 - 둘 이상의 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절차가 이루어짐.
 -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와 소멸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병대상이 다른 회사 또는 그 일부인 경우가 있음.
- 분할합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뉨.
 -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
 -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 회사가 신설되는 「신설분할합병」

3. 인적분할 · 물적분할

○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인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
-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

○ 「물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자회사의 설립)의 회사분할

-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에게 부여
-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기존회사의 지배관계 유지

Ⅲ. 외국의 회사분할제도 개관

1. 미국

- 연방내국세법상 회사분할을 비과세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규정
 - 주(state) 회사법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연방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연방 내국세법은 회사가 주주에게 타회사주식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데(355조), 이 제도를 이용하여 과세되지 않고 주주에게 회사자산을 분배하는 방법이 spin-off, split-off, split-up임.
 - 이들 3가지 회사분할형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구조조정수단(tax free corporate reorganization)
 - 이 가운데에서 특히 spin-off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당해 회사가 소멸되는 split-up 방식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가. 분할의 형태

- 「Spin-off」
 - 피분할회사가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에 회사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분할후 회사(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의 주주에게 배당으로서 분배
 - 피분할회사는 존속(불완전분할)

- 「Split-off」
 - 피분할회사가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에 회사재산을 현물출자하고, 분할후 회사(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가지고 있는 피분할회사 주식의 일부와 교환하여 주주에게 분배
 - 피분할회사는 존속(불완전분할)

- 「Split-up」
 - 피분할회사가 복수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에 모든 회사재산을 현물출자하고, 분할후 회사(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의 주주에게 분배
 - 피분할회사는 소멸(완전분할)

나. 분할절차 (델라웨어 회사법의 경우)

-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 피분할회사로부터 분할후 회사로의 현물출자계약은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체결

- 주주총회의 결의
 - 출자대상이 피분할회사 재산의 전부 또는 실질상 전부인 경우 및 피분할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 Split-up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분할회사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 그러나, 통상 출자대상이 회사자산의 일부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는 불필요

— 주총결의시 사외주식의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

○ 분할후 회사의 주식발행

— 분할후 회사는 이사회 또는 정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분할후 회사 주식의 분배

① Spin-off의 경우

—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그 지주비율에 따라 배당으로서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분배

— 피분할회사는 잉여금 또는 순이익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

- 다만, 자본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이 회복될 때까지 배당으로서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분배하지 못함.

② Split-off의 경우

— 피분할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대가로 분할후 회사주식을 분배

— 피분할회사는, 자본이 침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 자기주식의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는 이사회결의로 가능

- 다만, 감자후의 자산이 회사의 부채를 지불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각하여 감자할 수 없음.

③ Split-up의 경우

- 피분할회사는,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후에 잔존하는 자산의 범위내에서,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지주비율에 따라 분배

○ 채권자보호절차(Split-up의 경우)

- 피분할회사는 해산후, 채권자에게 해산의 통지를 할 수 있음.
- 피분할회사가 해산통지를 하는 경우
 - 피분할회사는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그래도 채권자가 재차 청구하면,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할 금액을 결정받아야 함.
 - 거절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는 변제나 담보를 제공
- 피분할회사가 해산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를 알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
 - 채권자를 모르는 채권에 대하여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

다. 분할의 효과

○ 분할의 효력발생일

- 법률에 규정은 없고, 계약에 의함.

○ 재산의 이전

- 법률에 규정은 없고, 계약에 의해 이전

○ 주주의 지위

— Spin-off, Split-up의 경우

- 피분할회사의 주주는 지주비율에 따라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됨.

— Split-off의 경우

- 피분할회사가 감자를 임의소각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지주비율에 따르지 않고도 분할후 회사 주식을 분배할 수 있음.

○ 채권자에 대한 책임

— 계약에 의함.

○ 세제상의 효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분할에 대해서는 비과세

- 피분할회사가 자기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주식은 8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분할후 회사)의 주식일 것
- 당해 분배가 피분할회사 또는 분할후 회사의 이익분할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 것
-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후에 피분할회사 및 분할후 회사를 계속하여 지배할 것
- 피분할회사 및 분할후 회사의 사업활동을 5년간 계속할 것 등

2. 독일

- 독일 사업재편법(UmwG)의 제정
 - 과거 독일에는 사업재편에 관한 규정이 유한회사법, 증자법, 주식법 등에 단편적으로 존재하였을 뿐이고, 회사분할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음.
 - 그러나, EU 제6지침의 영향으로 1994년에 사업재편법(123조 이하)이 제정되면서, 1995년부터 회사분할제도를 시행
 - 사업재편법에는 회사분할의 방법으로 소멸분할, 존속분할, 분리독립의 3가지 유형을 규정
 -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합자회사, 합명회사, 상호회사, 협동조합 등도 대상

가. 분할의 형태

- 「소멸분할」(Aufspaltung)
 - 피분할회사가, 기존 또는 신설의 분할후 회사로부터 피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발행된 주식과 교환하여 회사재산을 양도하고, 청산 없이 해산
 - 분할후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를 신설분할, 기존회사인 경우를 흡수분할이라 함.
 - 피분할회사는 소멸(완전분할)

- 「존속분할」(Abspaltung)
 - 피분할회사가 기존 또는 신설의 분할후 회사로부터 피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발행된 주식과 교환하여 회사재산을 양도
 - 분할후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를 신설분할, 기존회사인 경우를 흡수분할이라 함.
 - 피분할회사는 존속(불완전분할)

- 「분리독립」(Ausgliederung)
 - 피분할회사가 기존 또는 신설의 분할후 회사에 회사재산을 양도하고,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물적분할)

나. 분할의 절차

1) 소멸분할 · 존속분할

- 분할계약의 체결
 -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분할계약서를 작성
 - 주식회사는 설립후 2년 이내에 분할을 금지
 - 분할계약서의 기재사항 법정
 - 분할교부금은 분할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분할계약서의 공증인 인증

- 분할계약서의 송부 및 공시
 - 주주총회의 1개월 전에 경영평의회에 송부
 - 주주총회의 소집전에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법원은 계약서를 수령한 취지를 공고

- 분할보고서의 작성
 - 당해 회사의 이사회는 분할에 관한 사항, 특히 주식의 교환비율 및 교부금에 대해 법률적·경제적으로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
 - 전체 당해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면 보고서는 불필요

- 분할검사인의 조사
 - 법원이 분할검사인을 선임
 - 분할검사인은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사하고 보고서를 작성
 - 전체 당해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면 검사는 불필요

- 출자검사인의 검사
 - 이전자산의 금전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검사

- 분할관련서류의 비치
 - 분할승인 주총의 소집전부터 분할계약서 등 분할관련 서류를 비치

- 분할승인 주주총회
 - 분할결의에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4 이상의 승인이 필요
 - 피분할회사가 지주비율에 의하지 않고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려면 전체 주주의 동의가 필요

○ 분할등기

— 등기신청시에는 분할계약서 등 분할관련 서류를 첨부

○ 분할의 공고

— 분할후 회사를 관할하는 등기법원은 분할등기를 관보와 1개 이상의 회사 공고지에 공고

-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

○ 채권자 보호절차

— 분할등기의 공고후 6개월 이내에, 채권자가 분할로 인하여 자기 채권의 이행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회사는 담보를 제공

— 분할계약서에 의해 채무가 할당되지 않은 회사는, 당해 채무가 분할후 5년 이내에 만기도래하고 또한 재판상 청구 또는 회사가 승인한 경우, 당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

- 공고 후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 주주의 청구

— 주식교환비율이 현저히 낮고, 분할후 회사의 주주의 지위가 피분할 회사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서 불충분한 경우, 주주는 현금의 추가 지급에 의한 보상을 분할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

2) 분리독립

○ 분할계약의 체결

—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분할계약서를 작성

- 주식회사는 설립후 2년 이내에 분할을 금지
- 분할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법정

- 분할계약서의 공증인 인증

- 분할계약서의 송부 및 공시
 - 주주총회의 1개월 전에 경영평의회에 송부
 - 주주총회의 소집전에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법원은 계약서를 수령한 취지를 공고

- 분할보고서의 작성
 - 당해 회사의 이사회는 분할에 관한 상세사항에 대해 법률적·경제적으로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
 - 전체 당해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면 보고서는 불필요

- 출자검사인의 검사
 - 이전자산의 금전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검사

- 분할관련서류의 비치
 - 분할승인 주총의 소집전부터 분할계약서 등 분할관련 서류를 비치

- 분할승인 주주총회
 - 분할결의에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4 이상의 승인이 필요
 - 피분할회사가 지주비율에 의하지 않고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려면 전체 주주의 동의가 필요

○ 분할등기

— 등기신청시에는 분할관련 서류를 첨부

○ 분할의 공고

— 분할후 회사를 관할하는 등기법원은 분할등기를 관보와 1개 이상의 회사 공고지에 공고

-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

○ 채권자 보호절차

— 분할등기의 공고후 6개월 이내에, 채권자가 분할로 인하여 자기 채권의 이행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회사는 담보를 제공

— 분할계약서에 의해 채무가 할당되지 않은 회사는, 당해 채무가 분할후 5년 이내에 만기도래하고 또한 재판상 청구 또는 회사가 승인한 경우, 당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

- 공고 후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다. 분할의 효과

○ 분할의 효력발생일

— 피분할회사의 분할등기일

○ 재산의 이전

— 피분할회사의 재산은 분할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분할후 회사에 이전

— 소멸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는 청산절차없이 해산

○ 주주의 지위

— 소멸분할 및 존속분할의 경우

-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계약에 정해진 배분에 따라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됨.
- 지주비율에 따라서 배분할 필요는 없음.
-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자기주식 및 분할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분할회사 주식에 배정하지 못함.

— 분리독립의 경우

- 피분할회사가 분할계약서에 따라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됨.

○ 채권자에 대한 책임

— 분할에 참가한 회사는 분할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피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

— 다만, 분할계약서에 의해 채무가 할당되지 않은 회사는, 채무가 분할후 5년 이내에 만기도래하고 또한 재판상 청구되거나 또는 회사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 세제상의 효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분할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이월결손금 및 감가상각 등의 승계를 인정

- 이전재산이 자산 및 부채뿐만 아니라, 종업원 등도 포함된 영업으로 이루어질 것
- 분할후 회사가 인수한 이전재산의 가액을 피분할회사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것

3. 프랑스

○ 회사분할제도의 효시

- 프랑스는 1966년 개정 회사법(371조 이하)에서 회사분할을 처음으로 제도화하였으며, 1988년에 사전공시제도나 분할검사인제도를 개선

가. 분할의 형태

○ 「회사분할」(scission)

- 피분할회사가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여, 회사재산을 분할후 회사에 이전하고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분배
- 분할후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를 신설분할, 기존회사인 경우를 분할 합병이라고 함.
- 피분할회사는 소멸(완전분할)

○ 「자산의 일부출자」(l'apport partiel d'actif)

- 피분할회사가 분할후 회사에 회사재산의 일부를 양도하고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 피분할회사는 존속
 - 자산의 일부출자의 해석상, 피분할회사가 분할후 회사로부터 피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해 발행된 주식과 교환으로 회사재산을 양도할 수 있음.
- 해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회사분할과 절차·효과가 동일함.

나. 분할의 절차

- 분할계획서의 작성
 -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분할계획서를 작성
 -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을 법정
 - 분할교부금은 분할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분할계획서의 공시 및 송부
 - 분할계획서는 분할승인총회의 1개월 이전에 상사법원에 제출하여 법정공고신문에 공시

- 분할보고서의 작성
 - 당해 회사의 이사회는 주식의 교환비율 및 그 평가방법을 법률적·경제적으로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의 열람에 제공

- 분할검사인의 조사
 - 법원이 분할검사인을 선임
 - 분할검사인은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사하여 보고서를 작성
 - 신설분할의 경우 및 분할후 회사 주식이 피분할회사 주주의 지주비율에 비례하여 분배되는 경우, 분할검사인에 의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면제

- 출자검사인에 의한 조사 및 보고서의 작성
 - 피분할회사가 출자한 순자산액이 분할후 회사의 자본증가액, 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액 이상인지를 검사

○ 분할관련 서류의 비치

- 당해 회사는 분할승인 주총의 1개월 이전부터 분할계획서 등 분할 관련 서류를 비치

○ 분할승인 주주총회

- 분할결의에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이 필요
 - 피분할회사가 지주비율에 의하지 않고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려면 전체 주주의 동의가 필요
- 분할에 의해 당해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주주의 전원일치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분할결정은 불가능

○ 주주보호

- 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불인정

○ 분할등기

- 당해 회사는 분할실행을 위한 모든 행위와 그 합법성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

○ 채권자 보호절차

- 사채권자의 보호
 - 분할계약서는 피분할회사의 사채권자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피분할회사가 사채권자의 청구에 기하여 사채상환을 신청한 때는 그러하지 않음.
 - 사채권자집회에서 분할계약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수권받은 사채권자대표는 상사법원에 이의신청 가능

- 사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보호
 - 분할후 회사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분할회사의 부채의 일부만을 각자 개별적으로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피분할회사의 사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는 분할에 대하여 상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상사법원은 이의신청의 기각, 채권의 변제·담보제공 명령
- 이의신청은 분할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다. 분할의 효과

- 분할의 효력발생일
 - 신설분할의 경우, 신설회사의 최종등기일
 - 분할합병의 경우, 최종의 분할승인총회일
 - 다만, 분할계약서에 다른 날짜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날짜
- 재산의 이전
 - 회사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고, 회사재산은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
- 주주의 지위
 - 피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됨.
 - 배분은 지주비율에 따를 필요가 없음.
 - 자산의 일부출자의 경우, 피분할회사가 분할계약서에 따라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됨.

—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자기주식 및 분할후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피분할회사주식에 배정하지 못함.

○ 채권자에 대한 책임

— 분할후 회사는 피분할회사를 대신하여 피분할회사의 사채권자 및 일반채권자에 대하는 연대채무를 부담

- 다만, 분할계약에 의해 개별적으로 채무를 분배한 경우, 채무를 분배 받지 않은 회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채권자의 이의신청 가능).

○ 세제상의 효과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분할에 대해 세제상 우대

- 피분할회사가 2 이상의 사업부자산(독립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부문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것
- 분할후 회사가 1개 이상의 사업부자산을 인수할 것
-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된 분할후 회사주식의 주주구성이 피분할회사와 동일하고, 각 주주가 분할후 5년간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

4. EU

○ EU는 1982년 제6지침에서 회사분할을 규정

— 이것은 가맹국에 회사분할제도의 도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는 가맹국에 대하여 주주·채권자 보호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임.

가. 분할의 형태

○ 「회사분할」

- 피분할회사가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여, 그 회사재산을 분할후 회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분배
- 분할후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를 신설분할, 기존회사인 경우를 분할합병이라 함.
- 피분할회사는 소멸(완전분할)

○ 「존속분할」

- 피분할회사가 회사재산을 분할후 회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분배
- 분할후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를 신설분할, 기존회사인 경우를 분할합병이라 함.
- 피분할회사는 존속(불완전분할)

나. 분할의 절차

○ 분할계획서의 작성

-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분할원안을 작성
- 분할원안의 기재사항 법정
- 분할교부금은 분할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분할원안에 배분할 수 없는 적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할원안에서 각 분할후 회사에 배분되어야 할 순자산액에 비례하여, 분할후 회사 사이에 배분
- 분할원안에 배분할 수 없는 소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후 회사는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

○ 분할원안의 공시

- 분할승인 총회의 1개월 이전에 기록부에 기재하고, 전문 또는 발췌문을 관보에 공고

○ 분할보고서의 작성

- 당해 회사의 이사회는 분할에 관한 상세사항, 특히 주식의 교환비율 혹은 교부금에 관해 법률적·경제적으로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
 - 다만, 모든 당해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고서가 불필요

○ 분할검사인의 조사

- 법원 또는 행정청이 분할검사인을 선임
- 분할검사인은 분할원안을 검사하여 주주에게 제공해야 할 보고서를 작성
 - 다만, 모든 당해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고서가 불필요
- 신설합병의 경우, 분할후 회사의 주식이 피분할회사 주주에게 지주 비율에 따라 분배되면 분할검사를 면제

○ 분할관련 서류의 비치

- 당해 회사는 분할승인 주총의 1개월 이전부터 분할원안 등 분할관련 서류를 비치

○ 분할승인 주주총회

- 가맹국은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여야 함.
- 가맹국은 당해 회사의 이사가 주총에서 조건안의 채택일로부터 주총일까지 발생한 모든 중요한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국은 분할후 회사의 주총의 생략을 규정할 수 있음.
 - 피분할회사 총회의 1개월 이전에 분할원안(발체)을 공고
 - 분할후 회사의 모든 주주가 분할원안의 열람이 가능
 - 소수주주에 의한 주총소집청구권을 규정(다만, 그 비율은 주식의 5% 이내로 규정)
- 분할후 회사가 전체로서 피분할회사의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맹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한 피분할회사의 주총을 생략할 수 있음.
 - 분할의 효력발생 1개월 이전에 분할원안(발체)을 공고
 - 당해 회사의 전체 주주가 효력발생 1개월 이전에 분할원안을 열람 가능
 - 소수주주에 의한 주총소집청구권을 규정(다만, 그 비율은 주식의 5% 이내로 규정)
 - 분할원안 작성후에 피분할회사에 생긴 중요한 자산변동에 관해 분할후 회사 및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보고

○ 분할의 공고

— 분할은 등기부에 기재되고 관보로 공시되어야 함.

○ 채권자 보호절차

— 가맹국은 채권자보호를 위한 다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분할에 의해 당해 회사의 채권자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담보 청구권을 부여
- 분할원안의 채무배분에 대해 분할후 회사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할후 회사는 연대채무를 부담
(다만, 모든 분할후 회사가 피분할회사의 전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보호조치는 불필요)
-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에 분할원안이 부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

○ 주주의 청구

— 가맹국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이 피분할회사 주주의 지주비율에 따라 분배되지 않는 경우, 피분할회사의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할 수 있음.

○ 「금전분할」

— 가맹국이 분할교부금이 분할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인정하면, 분할규정을 준용

다. 분할의 효과

- 분할의 효력발생일
 - 가맹국이 분할의 효력발생일을 규정

- 재산의 이전
 - 피분할회사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분할후 회사에 이전
 - 회사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해산

- 주주의 지위
 - 피분할회사 주주는 분할계획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됨.
 - 주식의 배분은 지주비율에 따를 필요가 없음.
 - 다만, 분할후 회사의 주식은 피분할회사의 자기주식 및 분할후 회사가 가지는 피분할회사의 주식에 배분하지 못함.

- 채권자에 대한 책임
 - 가맹국은 다음을 규정하여야 함.
 - 분할계약의 채무분배에서 분할후 회사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분할후 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
 - 모든 분할후 회사가 피분할회사의 전체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음.
 -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에 분할계획원안이 부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

IV. 우리나라의 회사분할제도

1.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 회사분할제도는 경제계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동안 도입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개정상법을 통하여 도입됨.

- 회사합병에 관한 규정은 있으면서도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불편을 해소

— 기업이 사업의 일부를 떼어내 별도의 독립 기업으로 육성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또는 한계사업부문의 분리에 의한 기업구조의 조정

○ 회사분할의 자유

—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분할이 가능(530조의2 1항 내지 3항, 530조의12).

- 주식회사에 한하여 회사분할제도 도입
-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인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가능(530조의2 4항)

○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 분할전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

2. 상법상의 회사분할 형태

○ 단순분할 및 분할합병

- 우리 상법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모두 인정

- 또한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병행할 수도 있음(530조의2 3항)

- 단순분할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 가능(530조의2 1항)

- 분할합병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 가능(530조의2 2항)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분할합병(530조의6 1항)과 신설분할합병(530조의6 2항)이 모두 인정됨.

○ 완전분할(소멸분할) 및 불완전분할(존속분할)

- 상법상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전 회사의 존속유무를 불문하므로 완전분할 및 불완전분할이 모두 인정됨(530조의2 1항, 2항)

○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 분할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을 포함하는데, 예외적으로 물적분할만의 경우도 인정
- 물적분할의 법적 근거 마련(530조의12)
 - 피분할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회사분할 규정을 준용
 -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신설분할 및 흡수분할

- 우리 상법상 피분할회사는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회사에 출자 가능

3. 분할절차

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530조의3 1항)
 - 분할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상세하게 법정
 -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530조의5)
 -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530조의6)

나.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 회사분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등의 사전공시 및 사후공시를 의무화

- 피분할회사의 공시의무
 - 피분할회사의 이사는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530조의7 1항).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공시의무
 -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530조의7 2항).
 - 분할합병계약서
 - 피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다. 주주총회의 결의

- 회사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530조의3)
 -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함(분할결의, 분할합병결의)
 - 주총승인 결의시, 무의결권 주주도 의결권을 보유

-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 주총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

- 종류주주총회의 개최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주총결의가 있어야 함.

-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이외에 그 주주 전체의 동의가 필요

라. 주주의 보호

- 회사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보호에 관련된 제도로는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 분할교부금을 지급받을 권리, 분할계획서 등 공시서류의 열람 청구권, 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음.

-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
 - 분할전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분할후 회사 주식의 배정은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
 - 그러나, 분할전 회사의 지주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
 -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을 부실한 회사로 집중시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후 회사의 주주 구성을 분할전 회사의 기존 주주구성과 동일한 비율에 따르도록 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530조의11 2항, 522조의3)
 - 합병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당해 회사의 주주가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
 -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지 않음.

마. 회사채권자의 보호

-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연대책임, 이익권 등과 같은 제도를 운용

- 연대책임의 부담
 -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530조의9 1항)

- 채무초과인 회사를 분할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한 쪽 회사로 집중시켜 유한책임의 이익을 누리려고 분할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분할 후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 연대책임의 배제 (책임제한)

- 예외적으로 분할승인 주총결의로 분할후 회사가 분할전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음.
- 분할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전 회사는 분할후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530조의9 2항, 3항)

○ 회사채권자의 이익권

—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530조의9 4항, 530조의11 2항)

- 채무인수의 제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조치가 필요

— 이 경우에 피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이의제출시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

바. 분할등기

- 회사분할은 분할후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분할등기를 함으로서 효력 발생 (530조의11 1항, 234조)
 - 회사가 분할을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할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분할로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530조의11 1항, 528조)

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회사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530조의4).
 - 단순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피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 가능
 -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지주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때에는,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감사인 등에 의한 조사생략

4. 회사분할의 효과

-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530조의10)

— 권리·의무의 개별적인 이전절차는 필요없음.

○ 배정 주식의 귀속주체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나,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

○ 분할교부금

— 회사분할 과정에서 신주배정비율에 따른 주식배정이 곤란하여 그 배정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분할교부금의 비율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음.
- 외국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출자금을 환급하여 가는 방법으로 회사 분할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할교부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EU 제6지침 등은 액면금액의 10% 이내로 제한).

○ 회사분할에 관한 계산

— 영업권

- 단수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 가능
- 따라서 이들 회사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하여,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후 5년 이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530조의8)

— 분할잉여금

- 회사분할로 인한 잉여금은 분할후 회사의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459조 1항 3호의2)
- 다만 잉여금중 피분할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분
할후 회사가 승계할 수 있음(459조 2항).

○ 세제상의 효과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익금산입(법인세법 16조)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익금산입(법인세법 17조)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법인세법 46조)
 - 일정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토지·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법인세법 47조)
- 분할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법인세법 47조)
- 분할후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계산 특례(법인세법 81조)

V. 회사분할과 구조조정

1. 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 기업환경의 변화

- 기업활동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기업들간의 경쟁이 격화됨.
-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 증가
 - 기업여건의 복잡 다양화
 - 소비자 욕구의 다양성 증대
 - 다품종 소량생산
 - 기업환경의 급변 : 기민한 대응을 요구
-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성으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폐단 발생

○ 기업의 대응

- 급변하는 기업환경하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부단히 조직의 개편을 추구
 - 조직개편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최적의 형태로 적응
 -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신규사업분야를 개척하고 기존사업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
 - 기업의 규모축소나 사업의 분할을 통해 기업활동의 기동성을 확보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규모의 적정화와 사업활동의 부문별 효율화를 추구
 -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응하여 자본·인력 등 경영자원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재배분하여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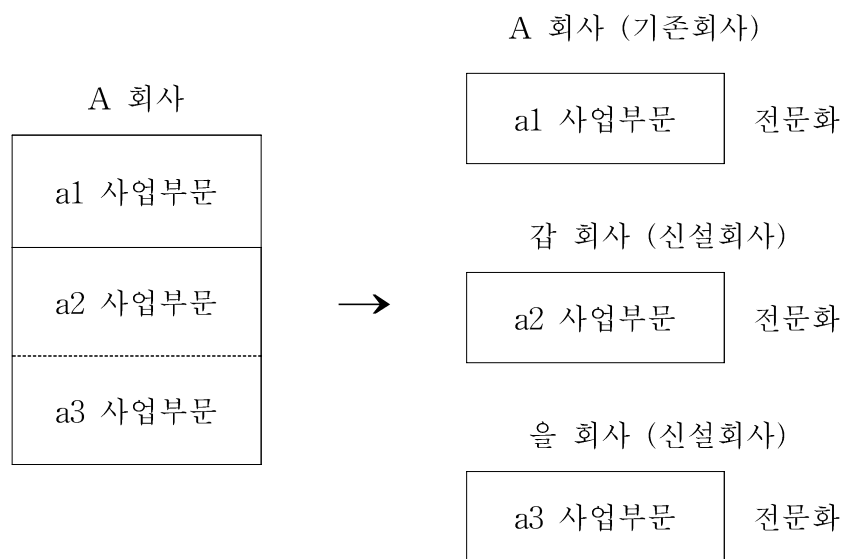
2. 회사분할을 이용한 구조조정방법

가.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 전문화에 의한 사업의 효율성 추구
 -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수의 사업부문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이 사업부문들을 분리하여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효율화를 도모
 - 기업경영의 규모확대 및 복잡화에 따른 경영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
 - 체질이 상이한 부문을 독립시켜 그 규모를 확대
 - 각 사업부문의 특수성 제고 가능
 - 지금까지의 균일한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확대지향에서 탈피하여, 각 경영자원이나 능력에 대응하여 비교우위를 가지는 업무분야나 특정한 지역과의 거래부문에 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성장분야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급속하게 발전한 특정부문 혹은 잠재성 있는 특정부문을 독립시켜 집중육성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그림 V-1>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 A회사는 a1, a2, a3 사업부문을 동시에 병행 운영

※ 각 분할후 회사는 자기 고유의 사업부문에만 전념

나. 부진사업의 정리

- 부진한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운영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
 - 채산성이 없는 부문을 분리하여 당해 회사의 자조노력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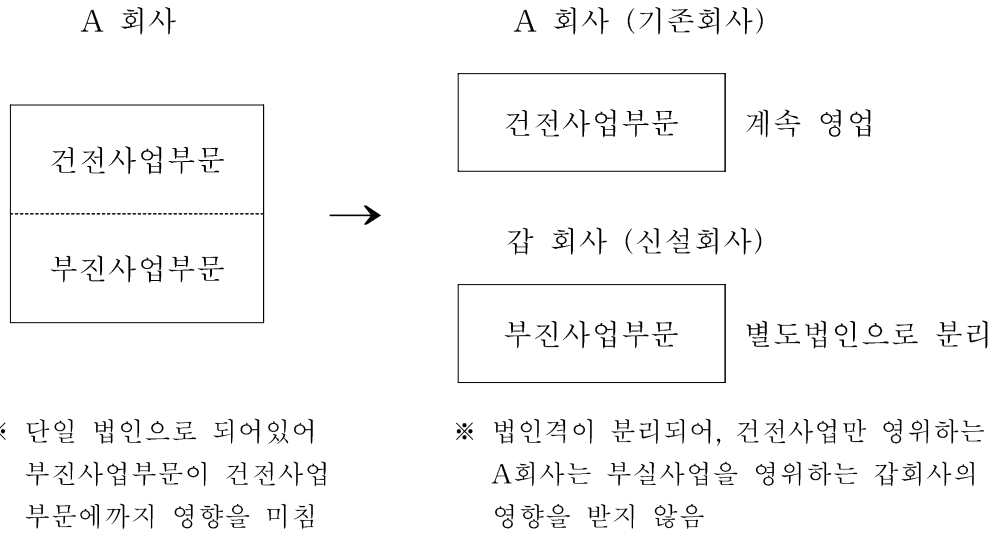
○ 기업내부의 결손부분을 효과적으로 차단

- 영업성적이 양호한 사업부문과 불량한 사업부문이 있을 경우에 경영자는 부진한 사업부문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함. 이러한 경향은 다른 사업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업성적이 양호한 사업부분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따라서 부진한 사업부문을 분리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

○ 불량자산의 분리

- 회사분할은 불량자산의 처리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은행의 재무상태가 불안하여 자금조달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 불량자산을 별도 은행으로 분할하여 이해관계자가 각 은행의 리스크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래 은행의 자금조달능력을 제고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회사분할에 의해 이러한 bad bank - good bank operation을 행한 예가 있음.
- 피분할회사측의 이점
 - 불량자산에 의한 자산의 손실부분을 즉시 인식하게 되어 재무상태가 건전해짐.
 - 불량자산을 분리하여, 수익에의 마이너스요인을 제거하고, 경영자원을 정상적인 영업에 투입가능
 - 장래 자산상태의 악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자금조달이 용이해짐.

<그림 V-2> 부진사업의 정리



다. 지주회사의 형성

○ 지주회사의 부분 허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8조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허용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하에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
- 지주회사의 허용으로, 복수의 회사 사이에서의 조직의 재편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분할은 이러한 조직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케 함.

○ 지주회사로의 전환

— 모회사를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모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 (물적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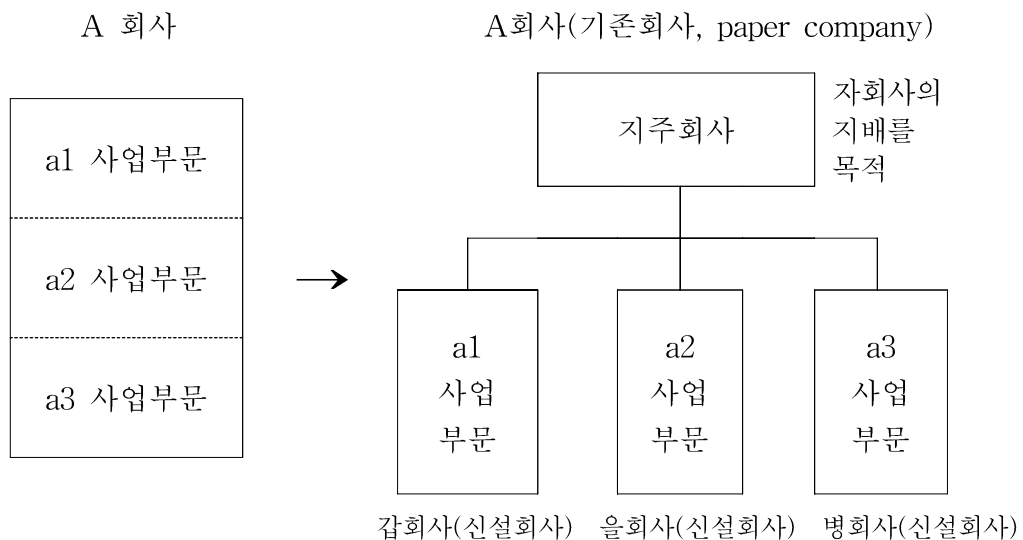
- 여러 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모회사를 분할하여, 현존 사업부문을 전부 자회사화하고 모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이들 자회사를 지배·관리
- 다양한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각 업종이나 지역별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전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의 전문화 및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도모

— 자회사간의 경쟁촉진효과를 기대

○ 지주회사가 성립된 이후, 회사분할을 이용하여 자회사를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방법으로 그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를 재편

— 내부유보나 준비금의 승계 등이 가능

<그림 V-3> 지주회사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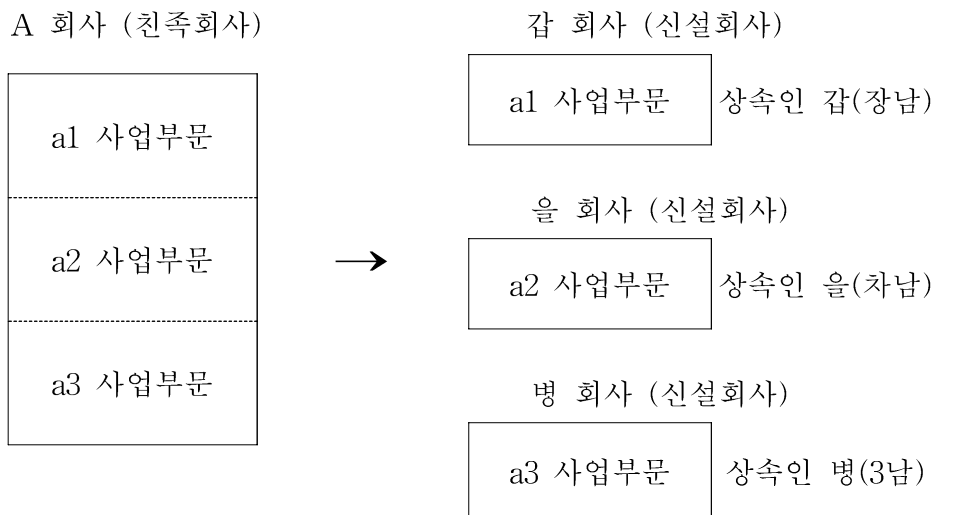


라. 주주간의 내분 해소

- 회사의 주주들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이를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수단
 - 폐쇄회사(친족회사)에 있어서 내분을 처리(상속분쟁의 해결수단)
 - 주주간의 분열·대립상태가 심하거나 장기화되면 원활한 기업활동을 저해하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기업을 해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대립되는 집단을 단위로 기업을 분할한 후 각 집단을 별개의 기업에 귀속시켜 난국을 타개

- 기업주의 세대교체
 - 기업분할을 통하여 기존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2세에게 분리이전 시킴으로써 기업의 유지를 가능하게 함.

<그림 V-4> 주주간의 내분해소



※ 상속인(갑, 을, 병)간 내분발생

※ 상속지분에 비례하여 A회사를 지배

※ 상속지분에 비례하여 A회사를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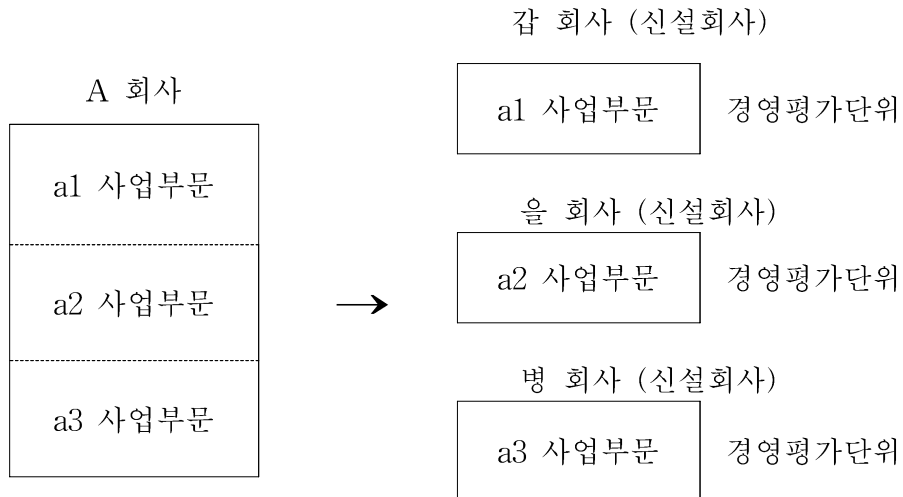
마.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 사업부문별 실적의 명확화
 - 각 사업부문의 실적이 회사분할에 의해 명확하게 되어 각 사업부문의 경영효율화가 촉진됨.
 - 회사분할의 결과 각 분할된 회사는 독립적으로 경영하게 되어 경영자는 당해 회사의 경영정책의 수립 및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
 - 주주는 특정사업부문별로 투자이익을 향수할 수 있으며, 투자회수의 판단을 사업부문 단위로 결정할 수 있음.

- 자본시장의 경영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
 - 많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가와 각 사업부의 생산성간에는 갭이 발생하지만, 단독 사업부의 회사에는 갭이 없어서, 자본시장의 경영감시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
 - 각 사업부문이 개별적으로 기업매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직접적인 경영감시자
 -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
 - 물적분할(자회사의 설립)의 경우에는, 모회사(모회사의 경영진)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
 - 모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는 모회사의 경영진을 통한 2단계의 감시가 됨.

<그림 V-5>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 ※ 전체를 1단위로 하여 경영실적 평가
- ※ 전체를 1단위로 하여 투자이익을 향유하고, 투자회수여부를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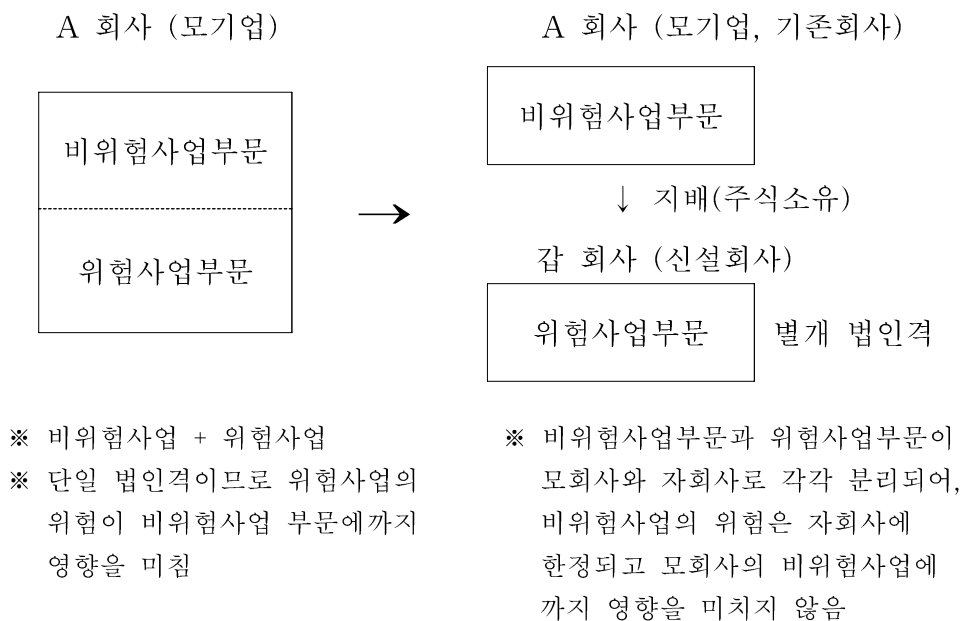
- ※ 각 분할후 회사 단위로 경영실적을 평가
- ※ 주주는 각 분할후 회사 단위로 투자이익을 향유하고, 투자회수여부를 판단

바. 위험부담의 제한

-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문을 모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회사로 만들어 수행케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제한
 - 새로운 상품개발, 신사업의 추진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기존의 사업부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 기업은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기존의 기업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추구
- 주식회사의 유한책임논리에 근거
 -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다수의 계열회사 체제는 부문별로 사업 위험을 제한하려는 의미도 존재
 - 대규모기업이 소자본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모회사의 일부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모회사의 대외적 신용은 그대로 누리면서 사업위험은 최소한도로 축소 가능

<그림 V-6> 위험부담의 제한



※ 비위험사업 + 위험사업

※ 단일 법인격이므로 위험사업의 위험이 비위험사업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침

※ 비위험사업부문과 위험사업부문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각각 분리되어, 비위험사업의 위험은 자회사에 한정되고 모회사의 비위험사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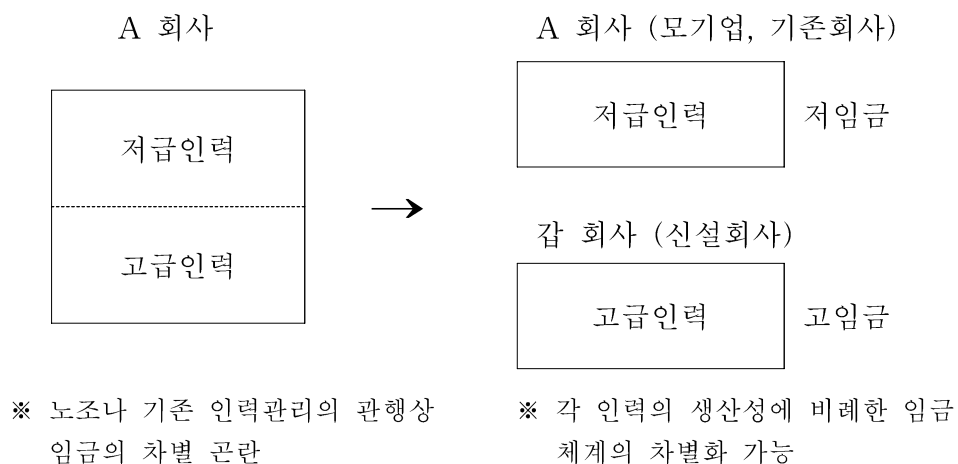
사. 노무관리의 차별화

- 회사를 분할하여 서로 상이한 노무·임금체계를 채용
 - 고용조건 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특정사업부문을 분리
 - 고임금의 인력과 저임금의 인력을 서로 다른 회사로 구분하여 능력에 따른 임금의 차별화를 시행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 임원자리의 증설 내지 인력재배치 목적으로 활용

-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
 - 회사를 분할하여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거대해진 노조를 세분하여 그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그림 V-7> 노무관리의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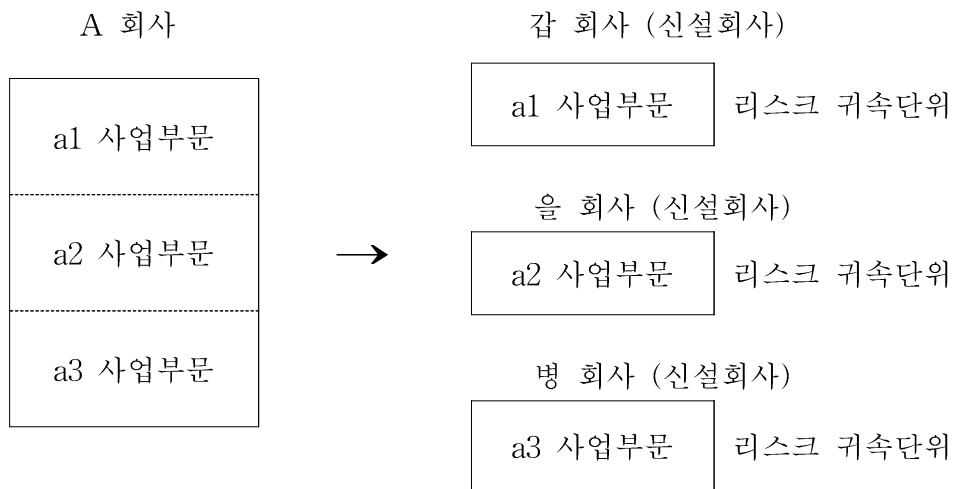


아. 자금조달의 용이

○ 리스크 프리미엄의 저하

- 회사분할로 기업의 리스크가 명확하게 되어,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리스크에 관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risk premium이 낮아지므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짐.
- 금융기관의 경우에, 분할후 각 금융기관의 특징이 명확하게 되므로, 예금자나 투자가는 금융기관의 경영내용의 파악이 용이해지는 한편, 투자할 수 있는 risk · return의 조합의 폭이 넓어짐.

<그림 V-8> 자금조달의 용이



※ a1, a2, a3의 리스크가 상이하나 전체가 1개 법인격에 귀속되어 있어 각 사업부문별로 리스크를 판정하기도 힘들고 그 의미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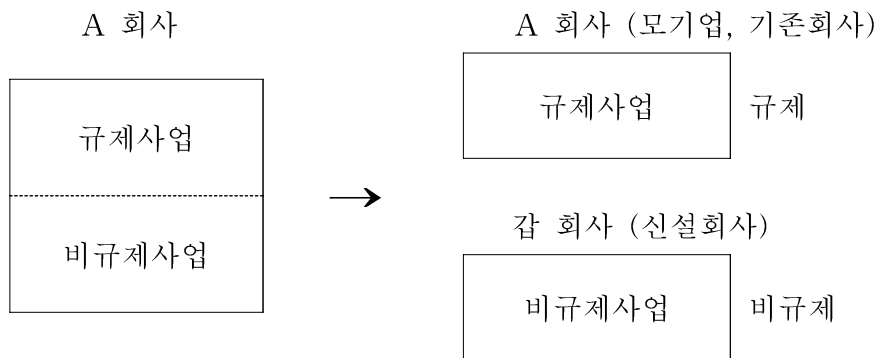
※ 각 사업부문별로 리스크가 명확해짐. 그 결과 리스크 프리미엄의 인하

자.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의 분리

○ 실정법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과 비규제사업을 분리

- 규제대상사업과 비규제대상사업을 1개의 회사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규제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전체적으로 규제를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
- 회사분할을 통하여 규제대상사업을 별도의 회사로 분리함으로써, 비규제사업은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벗어남.

<그림 V-9>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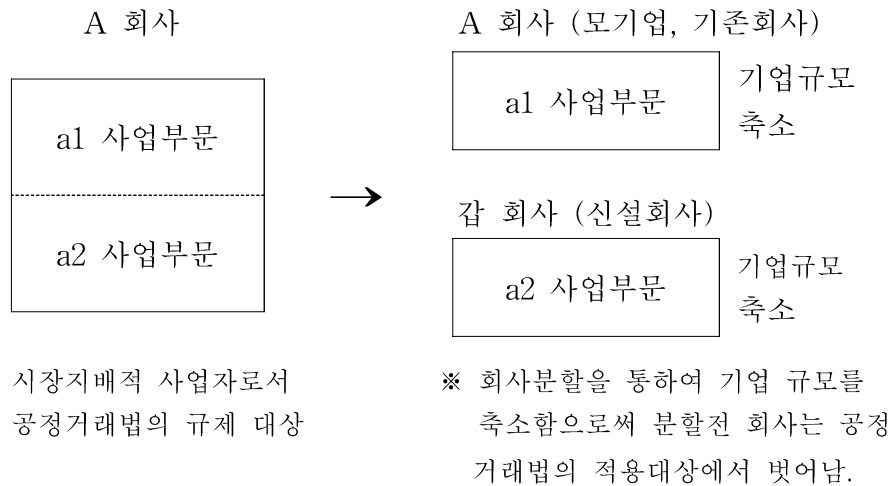
※ 규제사업 및 비규제사업이 1개 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규제받음.

※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이 별개회사로 분리되어 비규제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남.

차. 공정거래법 적용의 배제

-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집중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행정명령으로 분할되는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사전예방적으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

<그림 V-10> 공정거래법 적용의 배제



카. 주가상승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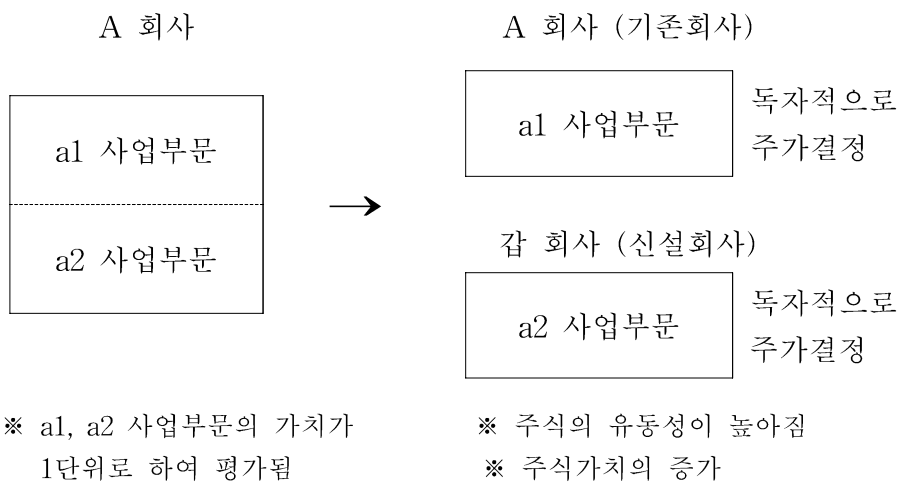
- 분할전 회사의 주식가치와 분할후 회사의 주식가치를 비교하면, 분할후 회사의 주식가치가 높은 경우에 많음.
 -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 등 공개회사는 주주이익 차원에서 고려
 - 분할후 회사는 증권시장에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분할실행후의 주가상승의 이유

— 이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식의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

- 주식이 개별적으로 거래되므로 다른 투자자를 유인할 가능성을 높아짐. 리스크 및 리턴의 조합이 다른 상품을 주식시장에 제공하므로, 단일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비해 주식의 유동성 (liquidity)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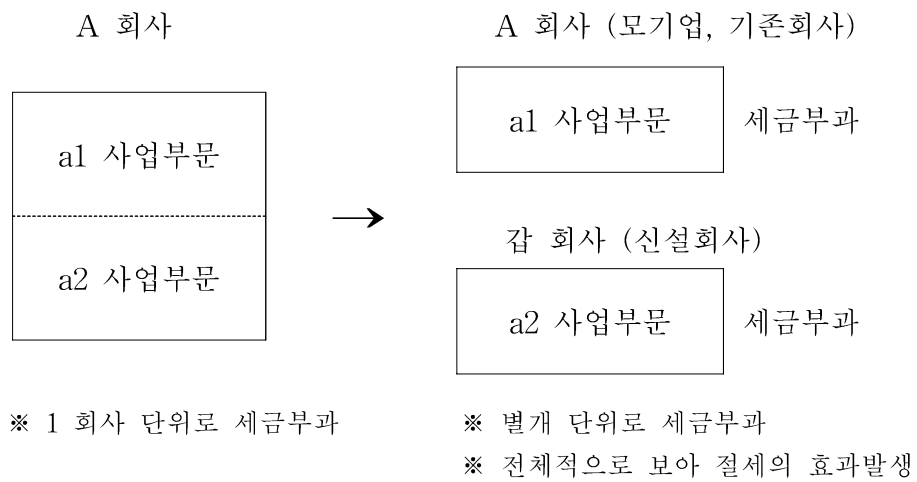
<그림 V-11> 주가상승 도모



타.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

- 회사분할을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분산하여 절세의 효과를 도모

<그림 V-12> 절세효과



참 고 문 헌

- 권기범,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상장협』, 제34호, 1996.
- 김진수, “기업분할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재정포럼』, 제15호, 한국조세연구원, 1997. 9.
- 박상조,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법적 고찰,”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1998.
- 신찬수·이철송·정준우, “회사분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상장협연구보고서』, 95-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5. 12.
- 원용수, “프랑스법상의 회사의 합병과 분할제도,” 『상사법연구』, 제14집 제2호, 1995.
- 이기수, “독일의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 『상장협』, 제36호, 1997.
- 홍복기, “상법에 있어서 회사의 분할에 관한 규정의 도입검토,” 『상사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 제20호), 1998.
- 藤田友敬, “持株會社の設立,” 『商事法務』, No. 1431, 1996. 8. 5.
- 前田庸 外 10人, “會社分割の法律問題,” 『金融研究』, 日本銀行金融研究所, 第16卷 第1號, 1997. 3.

通商産業省産業政策局産業組織課, “會社合併・分割の現状と課題,” 『別冊
商事法務』, No. 187, 商事法務研究會, 1996.

河本一郎, “個人株主保護の 觀點からみた 會社分割,” 『商事法務』, No.
1407, 1995. 12.

Robert Charls Clark, "Corporate Law," Little Brown, 1986.

The American Law Institute and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Commercial
Code Thirteenth Edition," Butterworth, 1995.